북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공 보

제1084호 2022. 5. 19. (목)

공 고

제2022-712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제2022-713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5

공람										

발행 : 부산광역시 북구 편집 : 소통담당관 (☎309-4071)

공 고

◉부산광역시북구공고제2022-712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널리 주민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6월 17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자치법규명

ㅇ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민선8기 출범에 따라 우리 구의 장기발전 전략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 미래전략실을 신설하고 분장사무 정비(안 제3조, 안 제4조의4)

ㅇ 기획감사실 분장사무 정비(안 제4조)

ㅇ 총무국 분장사무 정비(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별도서식 없음. 자유롭게 작성 가능)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기획감사실, 주소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 우편번호 : 46504, 팩스 309-4019)에게 제출하거나 전화(051-309-4032)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자치법규 개정안은 부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http://www.bsbukgu.go.kr) 고시·공고란에 입법예고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장 및 실장·담당관·과장의 직급 등”을 “국장 및 실장·과장의 직급 등”으로 하고, “국장, 실장·담당관·과장의”를 “국장, 실장·과장의”로 하며, “실·담당관·과의”를 “실·과의”로 한다.

제3조 “실·담당관·국의”를 “ 실·국의”로 하며, “ 기획감사실, 소통담당관, 총무국, 복지교육국, 주민생활지원국, 안전도시국을”을 “기획감사실, 미래전략실, 총무국, 복지교육국, 주민생활지원국, 안전도시국을”로 한다.

제4조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공공갈등 조정·관리에 관한 사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협치 및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의3을 삭제한다.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조의4(미래전략실) 미래전략실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두며,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사 신축에 관한 사항
2. 장기발전 전략사업에 관한 사항
3. 미래형 융·복합사업에 관한 사항
4. 공보·홍보에 관한 사항

제5조 제2항 제7호 “청사건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 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제5조제2항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전산관리 업무 총괄 및 행정전산화 추진

부 칙

이 조례는 2022. 8. 1.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장 및 실장 · 담당관 · 과장의 직급 등) ①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에 두는 국장, 실장·담당관·과장의 직급과 실·담당관·과의 세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국장 및 실장 · 과장의 직급 등) ① ---------- 국장, 실장·과장의----- 실·과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실 · 담당관 · 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소통담당관, 총무국, 복지교육국, 주민생활지원국, 안전도시국을 둔다.	제3조(실 · 국의 ------) ----------기획감사실, 미래전략실, 총무국, 복지교육국, 주민생활지원국, 안전도시국을 ---.
제4조(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두며,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기획감사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신설〉	12. 공공갈등 조정·관리에 관한 사항
13. 〈신설〉	13. 협치 및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의3(소통담당관) 〈삭제〉	
제4조의 4(미래전략실) 〈신설〉	제4조의4(미래전략실) 미래전략실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두며,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사 신축에 관한 사항
	2. 장기발전 전략사업에 관한 사항
	3. 미래형 융·복합사업에 관한 사항
	4. 공보·홍보에 관한 사항

제5조(총무국) ① ~ ② (생　략)	제5조(총무국) ① ~ ② (현행과 같음)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청사건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
8. ~ 15. (생　략)	8. ~ 15. (현행과 같음)
16. 〈신설〉	16. 전산관리 업무 총괄 및 행정 전산화 추진

◉부산광역시북구공고제2022-713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널리 주민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6월 17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자치법규명

ㅇ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민선8기 출범에 따라 우리 구의 장기발전 전략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 미래전략실장 직급 정비(안 제4조의3)

ㅇ 기획감사실, 미래전략실, 행정지원과, 재무과 사무분장 정비(안 별표1)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별도서식 없음. 자유롭게 작성 가능)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기획감사실, 주소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 우편번호 : 46504, 팩스 309-4019)에게 제출하거나 전화(051-309-4032)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자치법규 개정안은 부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http://www.bsbukgu.go.kr) 고시·공고란에 입법예고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장 · 실장 · 담당관 · 과장의 직급 및 보건소장, 동장의 직급과 실 · 담당관 · 과의 사무분장”을 “국장 · 실장 · 과장의 직급 및 보건소장, 동장의 직급과 실 · 과의 사무분장”으로 한다.

제2조 중 “국 · 실장,담당관은”은 “국 · 실장은”으로 한다.

제4조의2는 삭제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미래전략실) 미래전략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별표 1. 사무분장표(기획감사실) 중 제78호, 제79호를 삭제하고, 제80호부터 제8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0. 공공갈등 조정·관리에 관한 사항
81. 협치 및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82. 청원법에 따른 청원사무 총괄에 관한 사항
83. 공론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같은 표 사무분장표(소통담당관)을 삭제한다.

같은 표 사무분장표(미래전략실) 제1호부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구청사 신축에 관한 사항
2. 신청사건립기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장기발전 전략사업에 관한 사항
4. 미래형 융·복합사업에 관한 사항
5. 디지털복합문화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6. 도심형 트레블 로드 조성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구청장 전략 지시사업
8. 홍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9. 국정, 시정, 구정시책 홍보

10. 공고 및 고시에 관한 사항

11. 구정 홍보용 필름(슬라이드 포함)제작

12. 북구신문·점자소식지 편집·발간

13. 구 공식 SNS 운영

같은 표 사무분장표(행정지원과) 중 제58호부터 제5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8. 직소민원 관리

59. (사)북구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및 자원봉사활성화 추진

같은 표 사무분장표(재무과) 중 제33호 및 제34호를 삭제하며, 제35호부터 제4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 행정업무 정보화 추진계획 수립·시행

36. 지역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37. 행정업무의 정보화 개발 및 표준화 보급

38. 정보시스템(전산장비 포함) 도입 및 운영 관리

39. 행정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0.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41. 전산시설의 장비운영 및 유지 관리

42. 인터넷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43.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44. 정보화업무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45.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6. 그 밖에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4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변동되는 부서만 표기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본청의 국장 · 실장 · 담당관 · 과장의 직급 및 보건소장, 동장의 직급과 실 · 담당관 · 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td><td>제1조(목적) ----------
---------- 국장 · 실장 · 과장의 직급 및 보건소장, 동장의 직급과 실 · 과의 사무분장 ----------
--------.</td></tr>
<tr><td>제2조(직무) 국 · 실장,담당관은 부구청장을,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td><td>제2조(직무) 국 · 실장은----------
---.</td></tr>
<tr><td>제4조의2(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td><td>〈삭 제〉</td></tr>
<tr><td>〈신 설〉</td><td>제4조의3(미래전략실) 미래전략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td></tr>
<tr><td>[별표 1] 구본청의 사무분장표(기획감사실)
<table><tr><th>구분</th><th>분 장 사 무</th></tr><tr><td>기획
감사실</td><td>1.~ 77. (생 략)
78. 장기발전 전략 개발 및 미래형융·복합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9. 신청사 건립 입지선정 관련 전반적인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td></tr></table></td><td>[별표 1] 구본청의 사무분장표(기획감사실)
<table><tr><th>구분</th><th>분 장 사 무</th></tr><tr><td>기획
감사실</td><td>1.~ 77.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80. 공공갈등 조정·관리에 관한 사항
81. 협치 및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82. 청원법에 따른 청원사무 총괄에 관한 사항
83. 공론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td></tr></table></td></tr>
<tr><td>[별표1] 구본청의 사무분장표(소통담당관)</td><td>〈삭 제〉</td></tr>
</table>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본청의 사무분장표(미래전략실)	[별표 1] 구본청의 사무분장표(미래전략실)

구분	분 장 사 무
미래전략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구분	분 장 사 무
미래전략실	1. 구청사 신축에 관한 사항 2. 신청사건립기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장기발전 전략사업에 관한 사항 4. 미래형 융·복합사업에 관한 사항 5. 디지털복합문화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6. 도심형 트레블 로드 조성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구청장 전략 지시사업 8. 홍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9. 국정, 시정, 구정시책 홍보 10. 공고 및 고시에 관한 사항 11. 구정 홍보용 필름(슬라이드 포함)제작 12. 북구신문·점자소식지 편집·발간 13. 구 공식 SNS 운영

[별표 1] 구본청의 사무분장표(행정지원과)

구분	분 장 사 무
행정지원과	1.~ 57. (생 략) 〈신 설〉 〈신 설〉

[별표 1] 구본청의 사무분장표(행정지원과)

구분	분 장 사 무
행정지원과	1. ~ 57. (현행과 같음) 58. 직소민원 관리 59. (사)북구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및 자원봉사활성화 추진

[별표 1] 구본청의 사무분장표(재무과)

구분	분 장 사 무
재무과	1. ~ 32. (생 략) 33. 구청사 신축에 관한 사항 34. 신청사건립기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별표 1] 구본청의 사무분장표(재무과)

구분	분 장 사 무
재무과	1. ~ 32.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35. 행정업무 정보화 추진계획 수립·시행 36. 지역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37. 행정업무의 정보화 개발 및 표준화 보급 38. 정보시스템(전산장비 포함) 도입 및 운영 관리 39. 행정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0.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41. 전산시설의 장비운영 및 유지 관리 42. 인터넷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43.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44. 정보화업무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45.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6. 그 밖에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4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